

「개정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해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건설기계(중기)관리법

宋 南 起

<도로교통안전협회경기도지부 강사>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고 편리한 도구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다치게 하므로 달리는 홍기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원년으로 하여 '96년까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당국의 의지에 따라 다행히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인명피해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감소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순찰 등의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 합리적인 법령 정비, 과감한 투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교통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레미콘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잘 알고 지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1. 도로교통법 중 개정 법률

가. 개정이유

차량의 급증에 따라 교통여건이 계속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 가운데 반란 불능 차량이 계속 늘어나 처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차로가 정체되어, 많은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의 등화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계속 교차로에 진입하므로 신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측면을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교차로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518호, '92. 12. 8. 공포, '93. 7. 1.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령 중 개정 법률(대통령령 제 13,930호, '93. 7. 13. 공포,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 개정 법률(내무부령 제589호, '93. 7. 20. 공포, 시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개정 법률(법률 제4548호 '93. 6. 11. 공포, '93. 7. 1. 시행)



나.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상 유의사항

(1)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한 규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부칙③.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7호.

<현 행>

중기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었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가 교통사고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기가 차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 중기조종사가 무면허일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면제 예외 대상인 8개 항목 사고(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개 정>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 모든 중기를, 자동차의 정의에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하는 5종 중기(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5종)를 각각 포함시켜,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는 전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중기관리법상 도로교통법 배제 조항인 제31조 및 제35조를 삭제시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정의에 중기를 포함시켜 중기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무면허 중기조종 교통사고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소권 면제 예외 항목에 포함시켰다.

<유의 사항>

- 지방경찰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고시를 통하여 중기의 종류별, 도로별, 요일별, 시간별로 중기의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표지를 이용하여 중기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할 때에는 기존 통행금지표지에 보조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 사항>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꾼 건설기계관리법이 '93. 6. 11. 개정(공포)되어 '94. 1. 1. 부터는 중기가 건설기계로 법용어가 바뀌게 된다.

(2) 신호기, 안전표지 설치, 관리권한의 위임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영 제71조의 2

<현 행>

'91. 5. 31 경찰법·제정 이후 신호기 등 설치, 관리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비용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야 하나 신호기 등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신호기 등의 설치, 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전액 국비 부담이 불가하다.(경제기획원 반대)

<개 정>

신호기 등 설치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다시 이관하고 시·도지사는 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다.(지방비 확보근거 마련)

국가에서도 신호기 등의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기로 하였다.(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4498호; '92, 11. 25 공포, '93. 1. 1 시행)

(3)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구체화

-
- 도로교통법 제5조, 규칙 제7조의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현 행>

도로교통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의 신호(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호에서는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교통순시원」과 「전투경찰순경」만을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상의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조문 상위로 인해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예를 들면, 모범 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른 운전자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른 운전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자」가 보호를 받고 「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그 반대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개 정>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내무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써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경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과 일치시켰다.

<참고 사항>

현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현병,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청소년교통경찰대, 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나 현병은 군의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와 장소에서만 활동하므로 경찰관을 보조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수신호 능력이나 일반 시민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청소년교통경찰대는 통상 근무 장소가 학교 주변에 국한되어 있으며 차도에 내려서지 않고 인도에 서서 보행인을 지도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인정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모범운전자는 선발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 감독을 받고 있는 등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통상 교차로나 교통이 혼잡한 차도에 내려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선발되고 있어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수신호 능력이 탁월하므로 일단 모범운전자만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추후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갈 예정이다.

(4) 교차로 내 차량 정체시 진입금지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현 행>

교차로 내 차량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진행신호임을 이유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의 차량 소통에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 내 차량 정체시 교차로 진입금지 규정은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전자 준수사항」의 하나로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고 있다.(위반할 때 범칙금 7,000원 내지 15,000원)

<개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위반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단속근거를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보다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되 규정의 성격상 운전자 준수 사항 보다는 교차로 통행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제22조 위반은 현재 범칙금 7,000원 내지 15,000원으로 지방경찰청 고시의 경우와 동일 – 영[별표 2])

(5) 불법 주차 견인 후 반환 불능차량의 강제 처리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내지 제7항, 영 제11조의 3, 규칙 제13조의 4.

<현행>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 중 소유자 주소 불명, 인수 기피 등의 사유로 보관소마다 반환 불능 차량이 쌓여가고 있어 견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나 매각,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주차위반차를 견인한 후 차의 소유자 등에게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할 때에는 「1개월 경과시 까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통지하도록 하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차를 매각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가 되어 제거 보관한 연도 공작물 등의 매각 방법을 준용토록 하여 예산회계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였다.

매각을 위하여 경쟁입찰 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폐차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직접 관찰 관청에 말소등록 등을 촉탁하도록 하였다.

(6) 폭주족에 대한 규제

– 도로교통법 제42조의 2, 제48조 제9호, 제 110조.

– 통법 시행령 [별표 2] 제29호 아목

<현행>

젊은 오토바이족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굉음을 내고 교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경범죄처벌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법규에 분산되어 있었고 대부분 즉시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어서 단속의 효과가 적어 폭주족을 전제로 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

① 「공동위험행위」 규정 신설.

2인 이상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 뒤로 또는 좌, 우로 나란히 통행하면서 지그재그 운전, 서로 앞지르기, 급발진, 급가속 등을 반복하여,

–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 다른 차량의 앞·뒤, 좌·우로 끼어들어 통행의 자유를 박탈케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공동위험행위(폭주족)로 규정하고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였다.

② 소음 발생 행위 규정.

공동 위험 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발음 발생 행위(급 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에 대하여 범칙금 30,000원으로 통고처분하도록 하였다.

(7) 차내 소란 상태인 차량 운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0호, 영[별표 2] 제29호 자목

<현 행>

안전운전에 장애가 될 정도의 가무 소란 상태인 차량 운행금지는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전자 준수사항」의 하나로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고 있다.(위반시 범칙금 15,000 원)

<개 정>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단속 근거를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보다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칙금은 20,000원으로 통고처분도록 하였다.

<유의 사항>

소란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소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다.

(8) 제1종 특수면허 취득 요건 강화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 부칙②

<현 행>

렉카,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은 차체가 대형 이므로 고도의 운전 기능을 요하고 오랜 운전 경력을 필요로 하나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18세 이상이면 운전 경력없이 누구든지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 등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개 정>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 요건을 제1종 대형 면허와 동일하게 하여 강화하였다.

(현행) (개정)

연령 : 18세 이상 → 21세 이상

운전경력 : 필요없음 → 1년 6월

<유의 사항>

제1종 특수면허 자격 요건의 강화에 따라 기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이 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종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도록 하였다.

(9) 신호기 설치시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 청취

– 도로교통시행령 제71조 제2항

<현 행>

일부 국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후속하여 신호기가 설치되며 간선도로와 소규모 도로의 연결 지점에도 신호기가 설치되는 등으로 국토의 소통 기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신호기는 육교나 지하통로의 설치, 교차로 확장 등 도로관리청의 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되어야 교통소통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음에도 관련 국가 기관간 상호 협조가 미흡하였다.(건설부 요청)

<개 정>

건설부 의견을 수용하되 지방경찰청장이 4차선 이상의 국도에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 장소의 적합성, 도로시설 개선의 병행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10)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운전자 범칙금액 상향 조정

(버스전용차선제 실효성 확보 목적)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제5호, 제5-1호

<현 행>

지정차선(진로변경 금지 포함) 및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시 지역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을 최하 3,000원에서 최고 20,000원 까지 규정하고 있다.

<개 정>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의 경우를 지정차선(진로변경 금지 포함) 통행위반의 경우와 따로 분리하고, 승합, 승용, 화물 자동차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을 종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1) 교통안전표지의 개선, 보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표지 신설

<현 행>

경운기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심지 등에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행금지표지(일련번호 제201호)에 보조표지를 부착·사용하고 있다.

<개 정>

별도의 표지를 신설하였다.(일련번호 제206-1)

206-1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 금지 표지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	-----------------------	---

601-1	회전구역선 표시		회전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자동차가 회전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 자동차의 회전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604-1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나) 회전구역선 표시 신설

<현 행>

U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U턴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현재는 중앙선을 끊어놓거나 백색실선 또는 점선 등으로 표시하는 등 구구각색이었다.

<개 정>

중앙선이나 차선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노면 표시를 신설하였다.(일련번호 제 601-1)-편도3차선 이상의 도로에 한하여 표시를 한다.

(다) 진로변경 제한성 표시 신설

<현 행>

관련 표시 없음

<개 정>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를 신설하였다.(일련번호 제 604-1)

(라) 안전표지의 규격 축소 가능

<현 행>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 상황에 따라 최고 2.5배까지 기본 규격보다 확대만 가능하다.

<개 정>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등에는 기본 규격보다 0.5배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표 1]의 제4호 (주) 3.

3.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확대

도로 종 별	확 대 비 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나. 축소

표지 종 별	축 소 비 율
규제표지·지시표지	0.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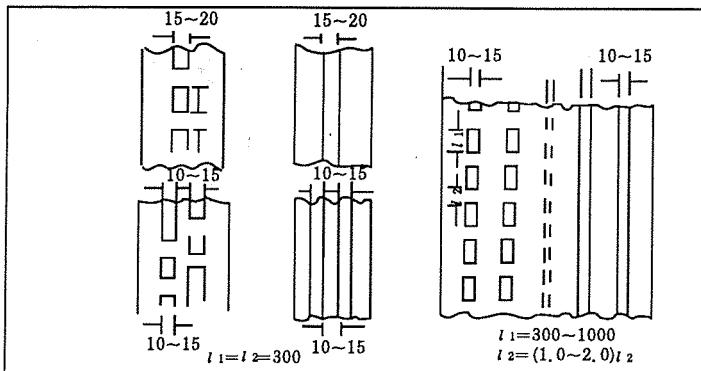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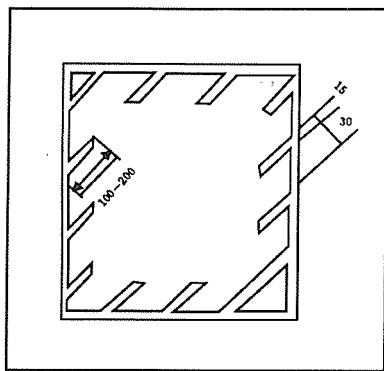
(마) 중앙선 표시

<현 행>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 복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 정>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도1차선 도로에도 필요시 실선의 황색 복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는 황색 복선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바) 도색 너비의 축소

<현 행>

단선이나 복선이나 똑같은 너비로 도색하고 있다.

<개정>

- 복선인 중앙선 표시는 단선보다 도색너비를 축소도록 하고
- 차선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련번호 제602(차선경계선 표시)의 도색 너비를 축소하고 일련번호 제702(정차금지지대 표시)도 중앙 부분은 도색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중 개정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 3490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소권 면제 예외 사유인 8개 항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운전,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과 빵소니, 사망을 제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는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점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 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이다.

가. 개정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 시행할 때에 비하여 자동차가 급증하여 550만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시설도 확·포장은 물론 안전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교통여건도 변화되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빵소니, 그리고 주요 교통법규인 중앙선 침범 등 8개 항목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높은 교통사고율을 내는 원인이 되었음을 감안하여 공소권 면제의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교통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주요 내용

- 법 적용 대상인 처리 범위에 중기를 포함시키고 중기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무면허 중기 조종사고도 공소권 면제 예외 대상이 됨.

2)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에 대하여 공소권을 면제하는 예외 사유를 종전의 8개 항목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도 합의 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 8개 항목의 사고에서 2개 항목의 사고를 신설 추가하여 모두 10개 항목으로 하였다.

(법 제3조 제2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차와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를 말한다.
2.(생 략)	2(현행과 같음)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생 략)	2.(중앙선침범 사고)
3. (생 략)	3.(속도위반: 20km/h 초과)

4. (생 략)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고속도로 포함)
5. (생 략)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생 략)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도로교통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생 략)	8.주취(약물영향)운전
9. (신 설)	9.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보도 침범 사고)
10.(신 설)	10.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개문발차 사고)

3. 건설기계(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

가. 개정 이유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게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속, 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다.

나. 주요 내용

- 1) 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어 법의 명칭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였다.
- 2) 건설기계의 등록의무와 관련,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를 명문화하고 등록 전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3)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과 같이 형식승인을 받게하는 한편, 형식승인의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정비 부품과 검사 기술 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4) 건설기계 대여업 및 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신고제로 신설하였다.
- 5) 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 등의 소형 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허없이 조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면허의 취소, 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교육 훈련 기준을 신설하였다.
- 6)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속도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과의 관계

종전에 중기관리법 제31조에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중기 및 중기조종사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만을 배제」(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 하도록 함.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에 있어 「중기가 도로상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2조 내지 제36조, 제40조(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5종 중기만), 제41조 내지 제50조, 제53조 내지 제61조,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차, 차마, 자동차 또는 자동차 등을 중기로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교통법 규정을 전면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의 적용조항

① 정의(법 제2조 14호)

자동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차 : 자동차에 해당하는 5종 건설기계이외의 모든 건설기계.

②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행위 규정 조항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36조(자동차의 견인제한)

제37조(정비 불량차의 운전 금지) 부분 적용

제38조(자동차 등의 점검) 부분적용

제38조의 2(운행기록계)

제39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

제41조(주취증 운전금지)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제42조의 2(공동위험 행위의 금지)

제43조(위험방지 조치).

제45조(안전운전 관리자)
 제46조(안전운전 관리자의 업무)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호
 제49조(교통안전교육)
 제52조(고용주 등의 의무)제2항
 제53조(고속도로 통칙)
 제54조(고속도로 위험방지 등의 조치)
 제56조(고속도로 통행방법)
 제57조(고속도로 횡단 등의 조치)
 제59조(고속도로 정차 및 주차금지)
 제60조(고속도로 진입시 우선순위)
 제61조(고속도로 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제62조(고속도로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제68조(운전면허)
 제74조(적성검사)
 제77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제81조(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제99조(면허증의 보관)
 제101조(자동차의 사용 정지)
 제115조의 2(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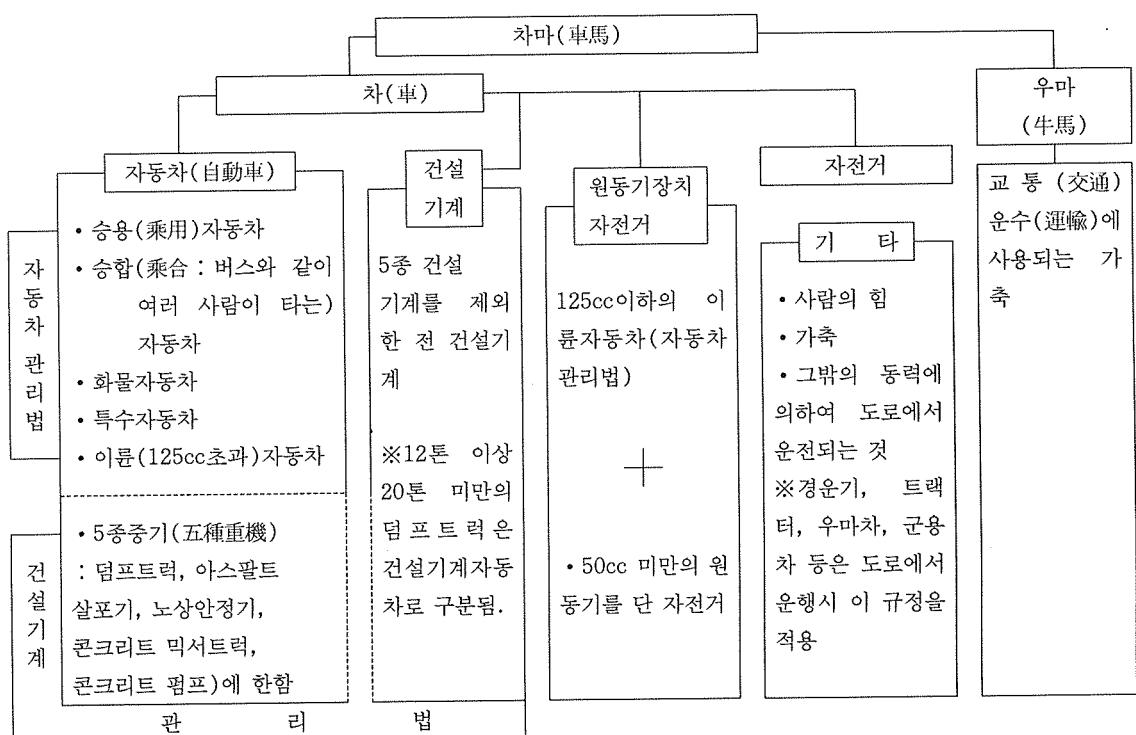
③ 구별기준

도로교통법상의 행위 주체는 주로 「운전자」 또는 「차마, 차,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차마」로 규정된 조항은 보행인을 제외한 도로상을 통행하는 모든 통행 수단이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나 「차」로 규정된 경우 「우마」는 제외되며 「자동차」로 규정된 경우에는 「우마」는 물론 「차」까지도 제외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정한 승용·승합, 화물, 특수, 이륜(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자동차와 5종 중 기만 적용받게 된다.

또 「자동차 등」은 자동차 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도로교통법 제15조 참조)하게 되어 있다.

차마와 차·자동차에 대한 개념 구분을 위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화물자동차의 통행 제한

서울에서는 도심 교통소통의 정체가 날로 더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심 및 부도심 구간의 통행을 적재량 및 시간대로 구분 통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5호 <1986. 9. 10>)

참고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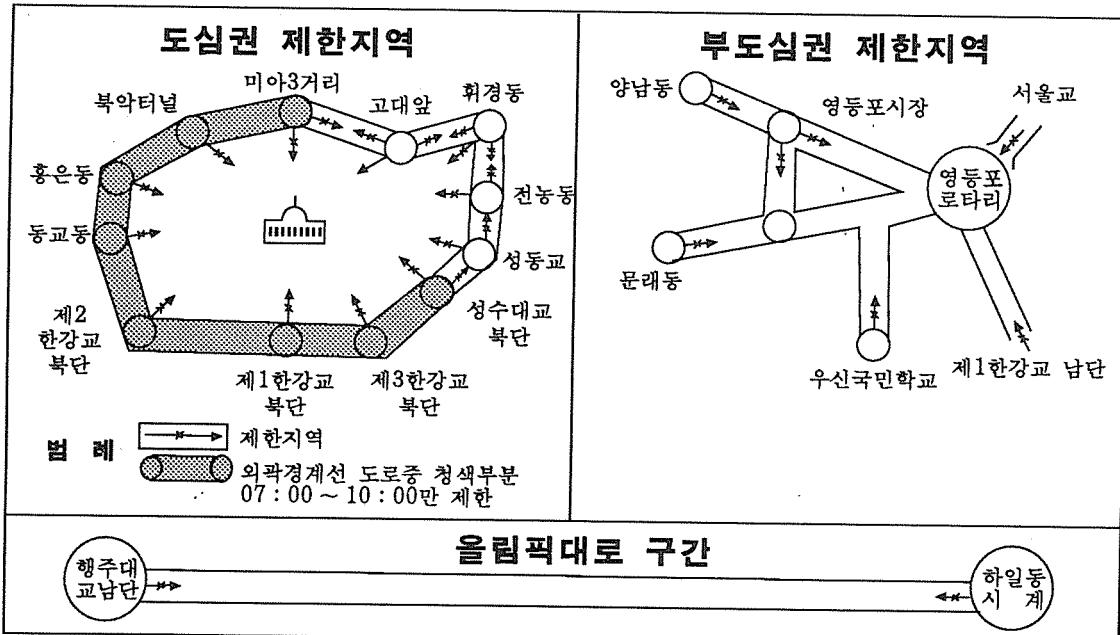
(1) 제한 구역

- 강북 : 제2순환선 내 도로(시청 중심 5km ~7km 반경 내 도심권)
- 강남 : 영등포 중심가(부도심권)

(2) 차종별 제한 시간 및 구역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1.5톤 미만	07:00~10:00	도심권 및 부도심권	
1.5톤 이상	07:00~10:00	"	토 요 일
3.5톤 미만	18:00~21:00	"	12:00~15:00
3.5톤 이상	07:00~22:00	"	
고압가스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연중 · 전일
10톤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올림픽대로	연중 · 전일

(3) 제한 구역도



(4) 경기 노선화물차량

도심권 및 부도심권 진입 전면 통제

미만 차량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차 및 폭발물 운반 자동차는 도심권(전외곽 경계선 도로 포함) 연중 전일 통행 제한하고 있다.

(5) 예외

○ 일요일 · 공휴일에는 장대차를 제외한 10톤